

提案理由

1. 第2次 各交流団作別 監野時局收拾
協議會の採擇の "言論の自律の
規制強化対策" 7個項目の實踐具
理を其間補正

2. 言論倫理憲議會の機能は強化して
2 判定事項の履行を義務化する
の 関し 名誉^等道德裁判所を設け、
政体外 言論人を拘束する等 禁制品 取
除^す 旨、次昭^ら憲議判定を求め^る 旨、
の 強圧干渉^を 取り除く^{こと} 旨
以便 言論機関を自律して 他人の名誉
に 権利^等 公衆道德^等 社会倫理を
侵害^を 取り除く^{こと} 健全な言論
の 暢達を 期^す 旨 提案

重要骨子

合意事項(一). 言論의 自律的 規制의 強化를 爲
한 倫理委員會를 둔다

第一條(目的)

合意事項(二). 新聞, 通信, 雜誌, 放送 등 言
論機關의 代表者를 義務적으로 倫理委員會
委員로 한다

第二條(委員會의 設置) 當否의 委員
으로 하여 委員會를 構成한다

合意事項(三). 倫理要綱의 制定 및 公表를 義務
화한다

第三條(言論倫理要綱) ① 制定公表

② 要綱內容

③ 要綱遵守義務

第四條(委員會의 議決) 公報, 泄秘, 教誨

合意事項(四). 倫理委員會之常設執行機構爲
審議會로 두되 그 構成의 中의 言論人의 過半數
가 되며 議長之 非言論人이 된다
諒解事項 - 議長之 表決에 參加하되 可否
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5條 (審議會)

① 常設執行機關의 審議會

② 審議會의 職務 - 倫理要綱 抵觸 異否 判定

③ 審議會 構成

1. 言論人 5人 - 委員會의 委員

2. 非言論人 4人 - 教育, 宗教, 女性, 法學

各界人士를 言論所 發長 輩의 委員

④ 委員會 定款의 依對 委員 委員

⑤ 審議會 議長之 非言論人

⑥ 事務局의 職務은 이다

第6條 (官職 兼任 禁止) 官의 干涉 以의

民間人으로 構成) - 委員의 官外 職은

(을)

국 회 사 무 처

韓國刑法

第7條 (官員之身分) 官員之公平清廉性是保持其權利

① 任期內，相當於報酬

② 職務清素，刑定上 秘密洩洩，收賄之刑法定適用

第8條 (官員之缺格事由)

第9條 (審訊，書類提出要求等) 審議會之

機能是強化其權利之關係者審訊之

當事者及公私團體之對立之書類提出外

調查依頼等及協助義務是規定

此等以此強制手段之命令

第10條 審議會職責之秘密保持規定

第11條 ① 審議之非公開

② 議決之遲延數出席外 遲延數贊成

③ 議長之表決權以可及多數叫之

決定權 保有

合意事項(六以前段) 判定を要求するときは被害者に重大な権理を網違及事項の関連を言論所管長官に報告する。

第12條 (審議判定要求)

- ① 被害者
- ② 言論所管長官
- ③ 判定要求のときは原則 15日以内判定、10日延長するときは

合意事項(五以前段) 審議能問題の言論内容を分析判定する

諒解事項 - 判定内容の報告、警告の解明訂正、謝絶の各指示による(告知書の6月以内印刷頒布の禁止、放送禁止、三民の会費資格停止の除名による等) 審議能問題(未合意)

第13條 (判定等)

- ① 要綱抵触軽微時 - 警告判定

② 公益上必要時 審議會 自體上 - 初告、警告

③ 名譽、信用上損傷 = 重要關係觸及 若干重以
- 解明、訂正、謝絕指示、判定

④ 內亂、騷擾、保安法、及刑法違反罪の該當
等 - 6個月以内の印刷頒布放送禁止

合意事項 (五の後段) 審議會の判定は... 是等言論
機關の公表は其義務化也

第十四條 (公表文の掲載及放送義務)

① 判定公表文は 是等言論機關の義務的
に 掲載公表の必要、但雜誌の判定
要求些の 相對當事者に 掲載、

② 掲載の放送方法は 審議會に 決定

③ 掲載の放送は 無料

合意事項 (六の後段) 判定の不服は 又は被害者
法院の訴求を許す也

第15条(判定文의 送達及 判定에 對해 不服)

① 判定文先至遲於 30日以内 送達

② 法院의 提訴, 審議會相對로 行訴의 時 —

審議判定受者로 被害者,

6月以内의 印刷解布, 放送禁止判定, 此等 言論人,

其他, 第16条(會費) — 會費之 每集會定款에 依하여

會費徵收

第17条(口庫補助) — 倫理委員會의 國庫補助에 對

委員會豫算及 審議會 運營

第18条(審議會活動保障) — 予於 妨害하지

말고

合意事項(七) 判定에 不응할 때의 制裁方法을 規定

한다

第19条(罰則) 3年以下의 懲役, 禁錮

1. 印刷解布, 放送禁止判定 違反者 若行人

2. 放送局長

~~109~~

2. 解明, 訂正, 謝罪 指示判定에 對해 提訴

(子) 169 号 833

(8)

공백

放送義務違反 発行人, 編輯人, 放送局長

3. 審議会職務 審議判定 秘密漏洩

4. 審議会 治部 妨害 業者

其他 第20条 (委任規定) 審議会 規則, 委員会

定款 以下 重要事項 是 迄 迄

附則 ① 公布日 并 施行

② ③ 施行 2月 内 以 委員会, 審議会

設置 以 倫理 要綱 制定

④ 最 初 委員会 召集 之 新聞 發行人 協會

⑤ 放送 法 第 2章 放送 倫理 委員会 規定

공백

法律第 規

言論倫理委員會法(案)

第1條(目的) 이법은 新聞放送^등 言論의 自律的 規制를

強化하기 위하여 言論 倫理委員會 (이하 "委員會"라 한다)

와 言論 倫理 審議會 (이하 "審議會"라 한다)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委員會의 設置) 委員會는 新聞·通信 등의 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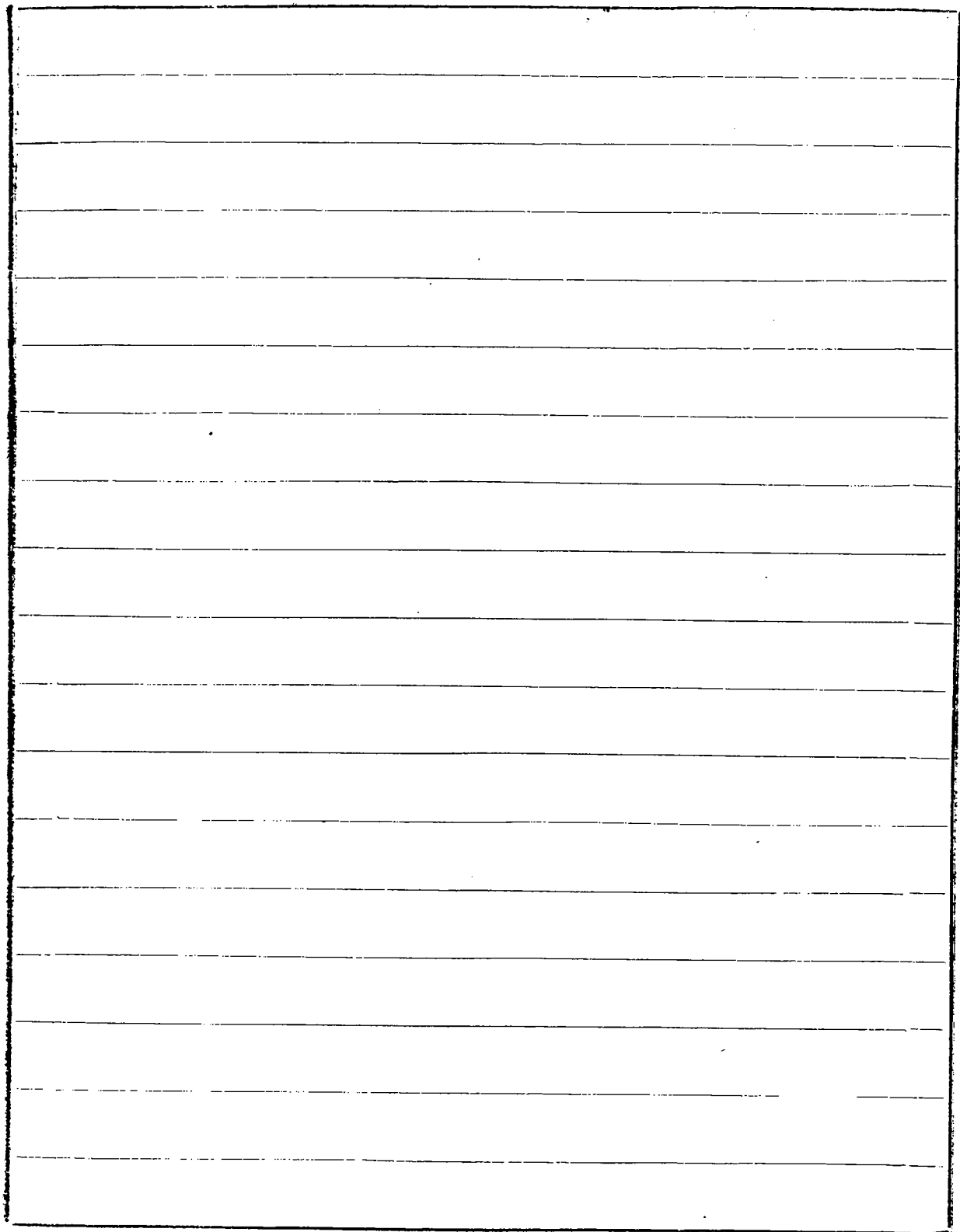
録에 關한 法律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報部의

登錄인 定期刊行物의 發行人과 放送法에 의한

~~107~~

放送局의 長官 當然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을)



第31條 (言論倫理要綱) ① 委員會는 言論倫理要綱

(이하

(이하 "倫理要綱"이라 한다) 을 制定. 公布하리라 한다.

② 前項의 倫理要綱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具體的

으로 ^{포함} 包含(記述)되어야 한다.

1. 國의 安全 및 公衆의 保障에 關한 事項.

2. 憲法上 機關의 尊嚴性 保障에 關한 事項.

3. 定期刊行物의 放送에 社會的 責任에 關한 事項.

4. 報道論評의 公正性 保障에 關한 事項.

5. 兒童 및 少年의 善導에 關한 事項.

~~106~~

(은)

국 PRB 무 ~~636~~
— 2 —

공백

6. 人權尊重에 관한 事項.

7. 家庭은 地의 錯亂에 관한 事項.

8. 他人의 名譽와 私生活의 秘密의 保障에 관한 事項.

9. 기타 社會倫理와 公衆道德의 保障 및 伸張에

관한 事項

③ 모든 委員會는 倫理要綱을 遵守할 義務가 있다.

第4條 (委員會의 議決) 委員會는 倫理要綱의 制定

또는 改訂과 기타 委員會의 議決은 在籍會員 4분의 1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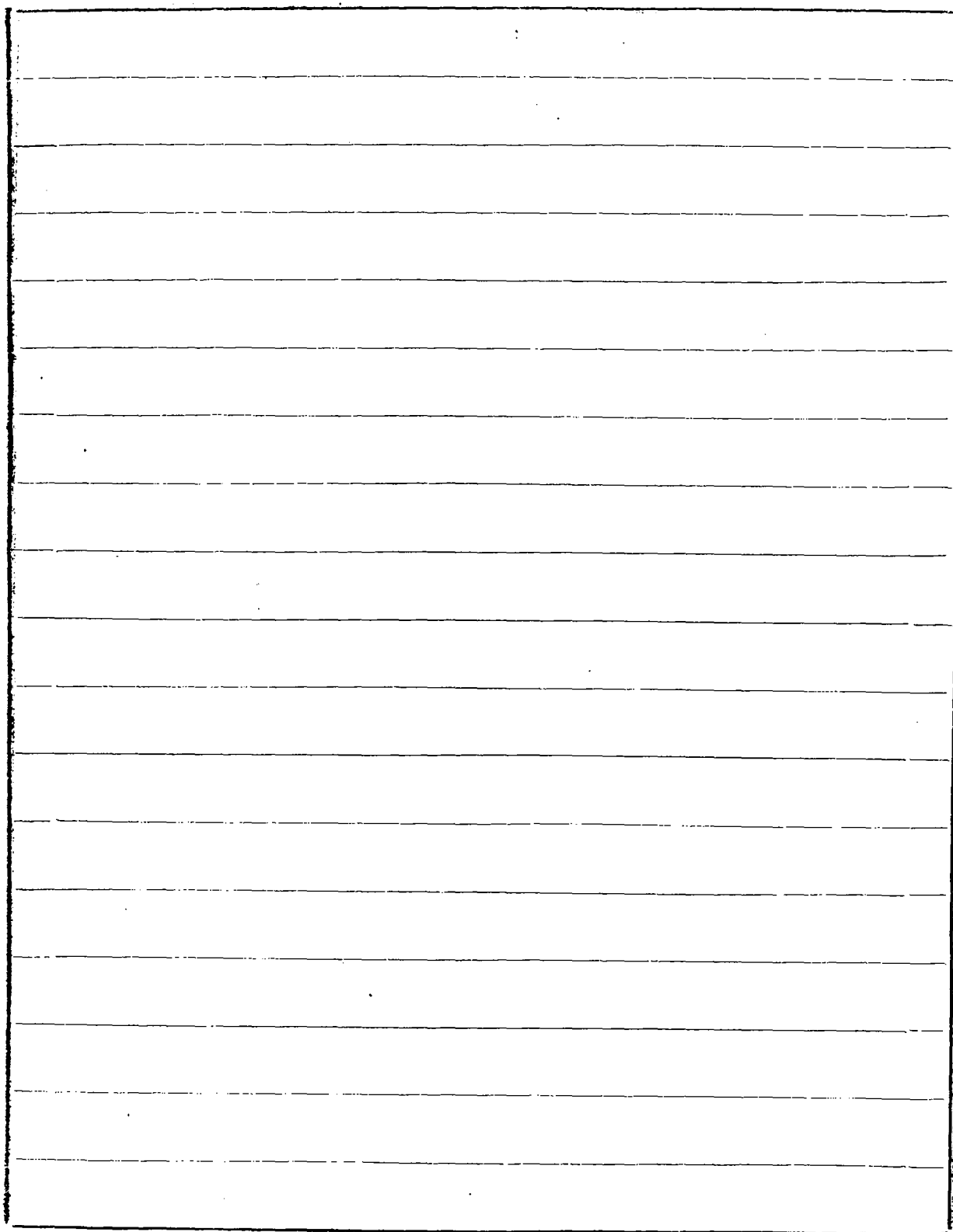
出席과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을)

규·회 165 차

— 3 —

637



第5條 (審議會) ① 委員會의 常設執行機關인 審議會
를 둔다.

② 審議會는 定期刊行物 또는 放送의 內容의 條理
要領의 ~~지속~~ 抵觸 또는 阻害를 審議 判定한다.

③ 審議會는 如左委員로 構成한다.

~~1. 委員會 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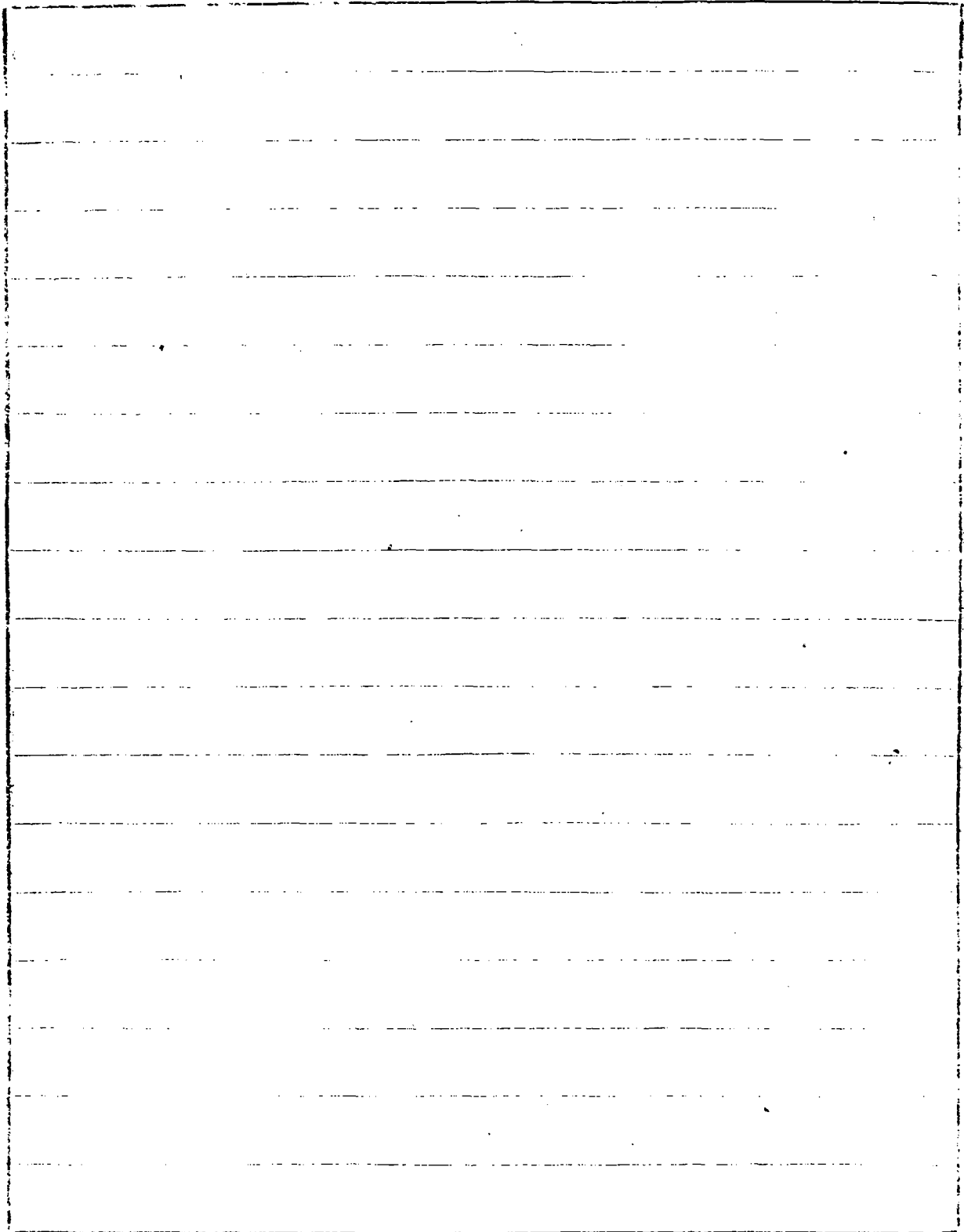
1. 委員會가 委員로 新聞發行人 또는 發行人이 有하는
~~대新聞~~

1人, 新聞編輯人 또는 編輯人이 有하는 1人, 新聞

~~이외~~
以外의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또는 發行人이 有하는

1人, 放送局의 長 또는 長이 有하는 1人, 5年~~이상~~

~~104~~



의 經歷은 新聞·雜誌·放送·通信記者 中之記者

이 及此者 1人.

2. 學識 德望이 높은 ~~者~~ 教育界·宗敎界·女性界·法

曹界 人士中에서 言論所 部長級의 委員 姓名 4人.

④ 審議會委員의 委員 姓名은 委員會 定款에 列明 定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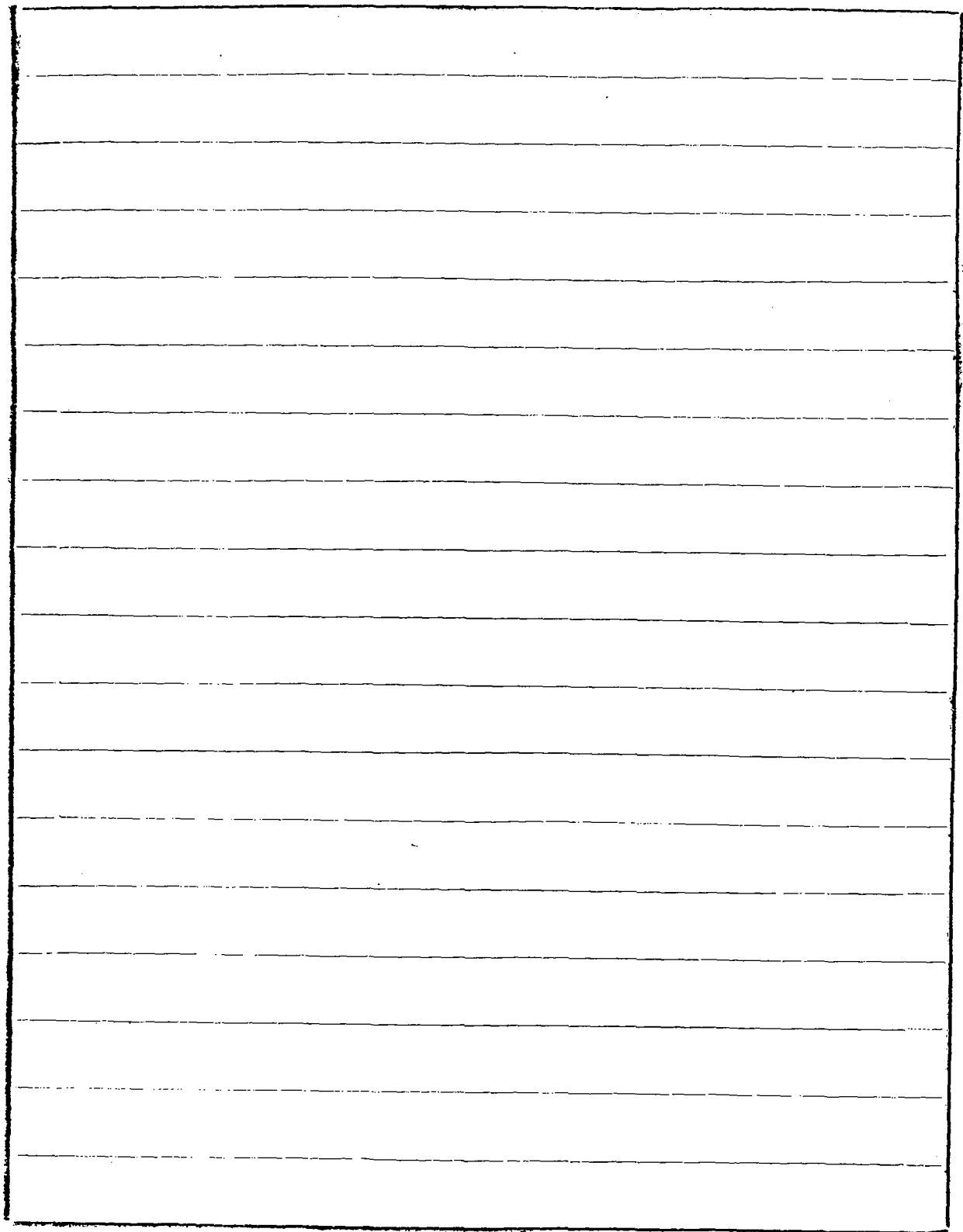
⑤ 審議會의 議長은 言論人이 兼任 委員인 定한다.

⑥ 審議會의 事務員은 필요한 必要한 職負를 定한다.

第6條 (官職兼任 ^{금지} 禁止) ① 審議會委員의 官公吏의

職을 兼하기 不得하다.

(을)



② 官公吏의 職에 充任者는 前條第3項의 依하여 委任

되었을 때에는 그 委任을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

官公吏의 職을 辭退하여야 한다.

第7條 (委任의 身分) ① 委任의 任期는 委任의 日

로부터 1年으로 하고 ^{상당}相當한 報酬를 支給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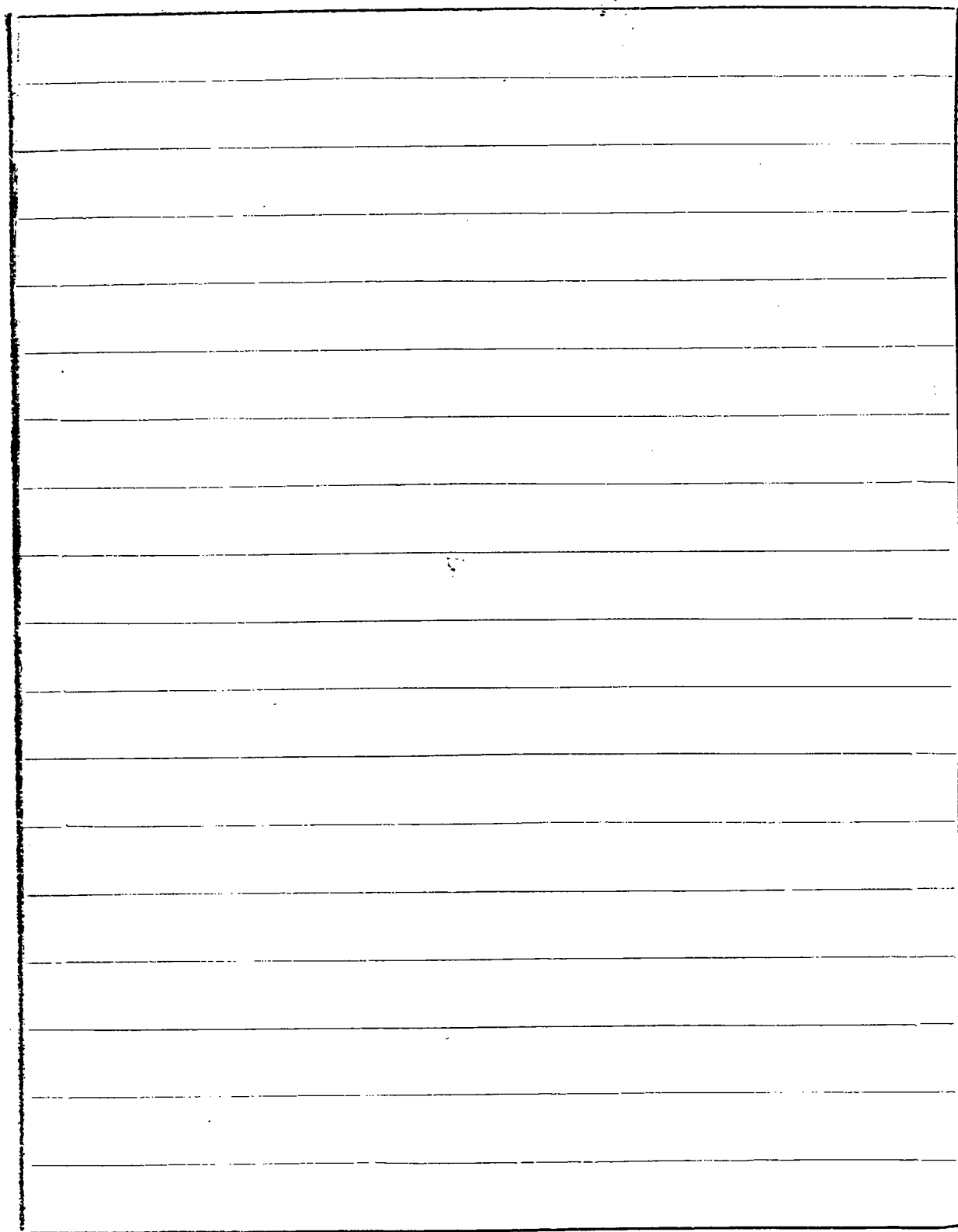
이에 ^관관하여는 委任令 定款으로 ^정定한다.

② 委任의 職務遺棄 判定高議上 秘密의 漏洩·收賄

등 ^관관하여는 刑法第122條: 第127條: 第129條

내지 ^관관하여는 規定을 ^관관하여 適用한다.

(을)



第8條(多負의 缺格事由) 다음各號에 ^{해당} 該當하는 者는 多

負이 될수 있다.

1. 禁治產者 또는 限是治產者.

2. 破產者로써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 또는 以上の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 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決定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 또는 以上の 刑을 宣告 받고 그 執行 猶豫의 期間

이 完了된 後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禁錮^{이상} 또는 以上の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場合に 그 宣告

(을)

국회사무처

101

161

猶豫期間³의 以₃知者.

6. 第6條의 違反者.

第9條 (審訊及書類提出要件) ① 審議會는 審議

에 ~~필요~~한 事項에 ~~대~~하여 關係者를 審訊할

수 있고, 關係者 其他 公私團體에 ~~대~~하여 書類

의 ~~제출~~이나 事業의 調査를 依頼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要求 또는 依頼를 받은 者는

이에 協力하여야 한다.

(을)

국회사무청

~~100~~
~~642~~ 160

第10条 (職務上 秘密の事) 審議会の 職務上

審議에 ^관한 事項의 秘密 其他 職務上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1条 (審議회의 審議外 議決) ① 審議회의

審議는 反對하지 아니 한다.

② 審議회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議決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案權을 가진다.

Lined writing area with multiple horizontal lines for text entry.

(을)

국 회 사 무 처

第12条(審議判定要件) ① 定期刊行物 또는 放送

의 ~~위~~ ^{부당}하여 ~~부당한~~ 侵害을 일으키는 定期

刊行物 또는 放送의 内容이 倫理要綱에

抵触되는 것을 理由로 更正을 要求

하기 ~~위~~ ^위하여 審議會에 審議判定을 要求할

수 있다.

② 言論所管部長官은 定期刊行物 또는 放送

의 内容이 倫理要綱에 違히 抵触된다고

인정 ~~할~~ ^{의견} 때에는 ~~본~~ ^{첨부} ~~문~~ ^서를 添附하여 審議會

(을)

국 회 사 무 처

審議判定는 要求할 수 있다.

③ 審議會는 前各項의 要求를 받은 때에는

15日^{이내}以内에 審議判定 하여야 한다. 다만
事實이 複雜한 때에 限하여 審議會의 決定으로 10日을
延長할 수 있다.

第12條 (審議會의 判定등) ① 審議會는 國內에서

發行되는 定期刊行物의 放送는 審査分析

하거나, 또는 審議判定 要求에 ^대하여 倫理

要綱에 接觸되는 部分이 輕微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申訴된 때에는 初告 또는 再告의 判定를

한다

(을)

국 회 사 무 처

① 審議會는 前項의 規定에 依^의하 審議 判定

이외에 公益上 必要한 때에는 勸告, 警告

를 할 수 있다.

② 審議會는 記事 또는 放送의 內容이 事實과

相異하거나, 甚히 誇張된 것으로서 個人

또는 團體의 名譽나 信用을 損傷한

것으로 倫理要綱에 抵触되었다고 인정^{인정} 認定^{認定}

된 때에는 이에 對하 辨明, 訂正, 謝絶

의 記事 또는 放送을 할 것을 判定

A large rectangular frame with multiple horizontal lines, intended for writing or drawing.

(을)

국 회 사 무 처

2000) 指出如下。

④ 審議會는 某/項의 判定에 있어서 倫理要

素에 接觸되는 부분이 甚히 重하여 國家

의 基本秩序를 害하였다고 ^{인정} 認定되지만,

刑罰 某의 條 ^{42의} 某90條・某115條・某116條

에 規定된 罪, 國家保安法 某1條 ^{42의} 某10

條에 規定된 罪, 反共法 某3條 ^{42의} 某8條

의 2에 規定된 罪를 犯하거나 또는

犯할 功을 煽動 提揚하는 것으로

~~2000~~

인정
공표된 때에는 그 定期刊行物 또는 放送

에 대하여 6월^{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刊行物의 印刷 帳簿 또는 放送^{금리}를 하는

제본을 할 수 있다.

第14條 (公表文의 掲載)의 放送義務)의 모든 定期

刊行物의 發行人 및 放送자의 長은

憲法에 依하여 倫理要綱의 抵觸되는

事項을 判定 公表하는 때에는 이를

公表한 날로부터 20^{이내}의

그 후는 揚載 또는 放送 하여야 하며

送料 또는 放送 申出 申인 경우에는 續送後

처음으로 發行되는 定期刊行物의

揚載 또는 放送 하여야 한다. 다만, 日刊

으로 發行하지 아니하는 定期刊行

物의 發行하는 審議委員會의 相對者에게

定期刊行物의 發行人, 審議會의 決定

하는 發行人의 全文을 揚載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掲載 또는 放送方法에 ^관한하여

審議會가 ^경정하는 바에 ~~의~~ 한다.
판정으로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倫理專員의

拒絶되는 事項의 判定 公表文의 掲載

또는 放送은 無料로 한다.

Blank lined paper area for writing, consisting of two vertical sections of horizontal lines.

(을)

국 회 사 무 처

第15條 (判定文의 送達 및 判定에 對한 不服) ① 審議會

는 判定文을 받은 날로부터 3日^{이내}의 判定文 正本을 第12

條의 判定要求者 및 相對當事者에게 送達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判定에 不服이 있을 때의 ^(審議會를 相對는) 第12條 第1項

의 規定에 의한 審議^{判定}請求外 第13條 第4項의

判定을 받은 審議判定의 相對當事者는 判定書^書의 送

達을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의 法院에 訴를 提

起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行政訴訟^판의 規定

을 準用한다.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intended for writing or drawing.

(을)

국 회 사 무 처 .

第16條(會費) 多員會는 定款이 ^{정액} ~~정액~~인 바에 의하여

그 會員으로 부터 運營에 ^{필요} ~~필요~~한 會費를 徵收 할

것이다.

第17條(國神補助) 國神는 予當의 ^{범위내} ~~범위내~~에서 多員會

에 補助金을 支給할 것이다.

第18條(富議會 ~~多員會~~의 活動 ^{보장} ~~보장~~) 누구든지 富議

會의 自由로 活動을 ^{방해} ~~방해~~하지 못한다.

第19條(罰則) 다음 各條의 1에 ^{해당}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공백

1. 第13條第4項の規定の^の放送~~の~~印刷
此放送

領事の禁止判定に違反し発行人の放送局の長。

~~2. 第13條第3項の^の規定の~~の~~印刷~~の~~放送~~の~~~~

~~記事の^の放送の判定~~の~~規定^を第14條の規定の^の~~
違反の審議会の判定公表文^を

~~掲載~~の放送局の叫び発行人・編輯人

の放送局の長。

3. 第10條の規定の違反の職務上秘密を漏

洩し者

4. 第18條の規定の違反の^の審議会の活動^を妨害^し者^を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은)

국 회, 사 무 처.

第20條 (委任規定) 審議會 及 委員會의 運用에

기타 필요

~~其他必要~~한 事項의 委員會 定款 及 審議會 令則으로

정
定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53호 過渡條)

② (~~委員會의 設置期間~~) 第2條 및 第⁵條 第3項의 規

定에 의한 委員會 및 審議會의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이하}의 設置하여라 한다.

(同 前)

③ (~~條理要綱의 制定~~) 條理要綱은 이 法 施行日으로부터
148 80 554 50일 內에

공백

